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1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98.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가.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 '96.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법률 제5453호, '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 시행령등의개정령 제112조(대통령령 제15598호, '97. 12. 13)』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행정절차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내용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안 제8조)
-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안 제8조제1항)
- 청문절차규정의 삭제(안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본 조례안의 제8조(청문)에 관한 개정은 행정절차법상 어떠한 처분이나 신고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 의견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통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로서 '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내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 조례 제8조제1항의 내용중 삭제하는 부분은 청문의 대상자가 조치명령을 받을 때에도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한 때에도 의견진술을 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게 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으며,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간의 기간을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97년 12월 22일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삭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 정비에 따라 삭제하게 되는 안으로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년월일 : 1998. 11.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 '96.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법률 제5453호 '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 제112조(대통령령 제15598호 '97. 12. 13)』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행정절차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내용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안 제8조)
- 나.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안 제8조제1항)
- 다. 청문절차규정의 삭제(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42조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 나. 협의사항 : 필요없음
- 다. 예산조치사항 : 필요없음
- 라.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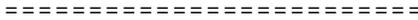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청문”을 제8조 “의견진술”로 한다.
- 제8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p>	<p>제8조(의견진술)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삭 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u>미리 10일 이상</u>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삭제>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u>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u>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삭제</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1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98.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가.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98. 5.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98. 10.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 방지(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 신설(안 제7조 내지 제9조)